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2015. 9. 19. 윤리감사관실

1. 검토배경

▣ 법관의 재판상 판단은 법관의 독립상 일반적으로 사법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져 왔음

▣ 그러나 법관의 재판상 판단이 문제가 되어 국민과 여론의 비난과 비판을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환형유치에 있어 벌금액에 따라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는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정 하한보다 낮은 유치기간을 정한 사례 [남○○ 부장판사(○○기)]
-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논란이 된 사례 [김○○ 부장판사(○○기), 이○○ 前 부장판사(○○기)]
- 뇌물수수 사건에서 필요적으로 병과해야 하는 벌금형을 누락하여 국감에서 지적된 사례 [2014년 광주지법 국감]

▣ 잘못된 재판결과는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 ➠ 직무감독을 행할 필요성 자체는 있음

- ①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음(상소절차, 청구이의 절차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
- ② 당사자간의 형평과 법적 안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음
- ③ 특히 고의·악의적인 명백한 오판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사법부의 신뢰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게 됨

▣ 다만, 재판의 독립이라는 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재판 판단에 대한 직무감독의 가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재판과 관련된 사법행정권(직무감독권)의 한계 검토 필요
- "재판의 독립" 원칙에 배치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검토실시에 앞서 검토방향을 먼저 설정하고자 함

2. 사법행정권 및 그 한계

가. 사법행정권의 의의

▣ 사법재판권의 행사나 재판제도를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정 작용

● 사법행정권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권 및 법관의 직무상 의무 준수와 그 위반에 대한 감독, 시정 관련 권한 포함

▣ 사법행정권자의 지휘 · 감독권

● 법원조직법 제29조 제3항 등은 "(소속기관장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을,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직무상 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법원조직법**
> 제29조(지방법원장)
>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 · 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
> **국가공무원법**
> 제57조(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법관도 공무원으로서 사법행정권자인 소속기관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함 ➠ "서면경고"와 "구두경고"(주의촉구)도 직무상 명령의 하나임

- 법관에 대한 서면경고와 구두경고는 (징계불문 시의 서면경고 외에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

● 직무상 명령은 그 본질상 위와 같은 서면경고와 구두경고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나. 법관의 독립에 관한 사법행정권의 행사 범위

▣ 사법행정상의 감독권의 한계

● <u>법관 본연의 직무범위인 재판에는 사법행정권이 미치는 않음</u> ➠ 헌법 제103조 법관의 직무상 독립의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원칙

- 사법행정권도 특정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권 행사에 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짐

> **대한민국 헌법**
>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 **제106조**
>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 **법관윤리강령**
> **전문(일부)**
>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
> **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 재판 과정에서의 오류는 심급제도를 통해 시정됨이 원칙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재판사항의 범위

● 의미 ➠ 법관이 재판의 형식으로 행하는 모든 작용

-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리로서 고유의 쟁송뿐만 아니라 광의로 재판의 형식으로써 행하여지는 절차 등을 포함. 비송사건, 가정심판, 소년심판, 집행사건 등도 이에 속하는 것

> 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 재판사항에 포함되는 내용 ➠ 재판의 내용, 재판의 절차 등 재판과 직접 관계 있는 모든 행위

- 재판이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코 이에 한정된 것만은 아님

▣ 직무감독권 범위 내에 있는 재판사항

● 재판의 독립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

-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로서, 법관이 법과 양심 이외의 일체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판단'한다는 의미

● 전국법관 워크숍에서도 절차규정에 명백히 위반된 재판진행 방식에 대한 주의환기, **명백한 실수에 대한 주의촉구 등은 사법행정상 감독권의 범위 내**라는 점에 대해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음

- 2009. 4. 20.과 21.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전국법관 워크숍에서 사법행정권의 한계에 대하여 논의

▣ 외국의 사례

● 독일의 경우, 연방법원의 판결례에 의하면 법관의 직무행위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행위"와 관계되는 모든 직무감독 조치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를 두고 있음

[핵심영역]

① 재판, ② 재판준비 및 실행에 이바지하는 모든 행동들, ③ 심리 및 재판의 과정 등

[예외]

핵심영역의 경우에도 **'명백한 실책'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감독조치가 가능

① 폐지된 법률을 적용한 경우

② 법원조직법상 변호사에 대해 질서유지수단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에도 소송지휘에 불응하는 변호사를 법정경위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끌어내도록 한 행위 등

● 일본의 경우에도 사법행정 감독권이 배제되는 '재판관의 재판권'은 어디까지나

재판의 '내용'임

- 재판을 행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태도나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사법행정의 감독권이 미친다고 봄
- 나아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도 명백한 법령위반, 명백한 오판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행정 감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봄[1)]

① 집행유예 결격자이고 징역형에 처하여야 할 사건을 부주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과거 유사 유형의 실수가 2회 더 있어 계고처분을 받은 사례 (1963.)

②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최고재판소 스스로 제정한 형사소송규칙시행규칙을 간과하여 오판을 하여 과료 처분을 받은 사례(1950. 소법정의 최고재판소 재판관 4명 전원을 과료에 처함)

● 미국의 경우도 재판에 관한 사항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함

- ① 뉴욕주에서는 법관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판결에 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② 뉴저지주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함

법관의 재판상 잘못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충분히 신중하고 능력 있는 법관을 기준으로 할 때 "명백한" 실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며, 아울러 법관의 잘못이 '터무니없는 것(무능)'이거나 '악의적'이거나 반복된 잘못이어서 그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를 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결국,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직무감독의 행사가 가능함

다. [참고] 재판사항 관련 물의사례 및 그 조치내용

▣ 김○○ 판사(○○기)

●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 소급작성 ➠ 감봉 4월 징계(2014년)

▣ 박○○ 판사(○○기)

● 경매사건의 기록검토를 소홀히 하여 유치권 신고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1) 裁判所法逐條解說 中券(1969), 146頁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있음' 표시 후 경매 진행 ➠ 서면경고(2005년)

▣ 김○○ 부장판사(○○기)

● 합의서 제출 간과 판결 ➠ 조치 없음(2007년)

-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반성문으로 오인하는 등으로) 문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사안

▣ 박○○ 판사(○○기)

● 법정구속 관련 고지절차 등 위반 ➠ 구두경고(2007년)

- 피고인을 법정구속을 하면서 법정구속 됨을 고지하지 않고 구속사유 고지나 변명의 기회 제공 등의 절차도 취하지 않았으며, 검사가 법정에 있음에도 검사를 통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실무관에게 영장을 주고 그대로 퇴정해버려 피고인이 도주

▣ 김○○ 판사(○○기)

●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착오로 영장 발부 ➠ 조치 없음(2000년)

- 영장당직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해당 법관에 대해서는 인사반영 조치(영동지원 전보)

▣ 김○○ 부장판사(○○기)

● 구속기간이 도과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소급하여 발부 ➠ 서면경고(2006년)

▣ 이○○ 부장판사(○○기)

● 사건처리 지연 ➠ 법원장과 수석부장이 수차 권고, 문책성 인사로 ○○지법 전보(2010년)

▣ 김○○ 판사(○○기)

●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실질심문기일에 불출석 ➠ 서면경고(2011년)

▣ 기타 유형별 사례

● 구속영장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아 불법구금 논란 ➠ 모두 구두경고

정○○ 판사(○○기, 2009. 6.경), 염○○ 부장판사(○○기, 언론보도됨, 2007. 8.경), 조○○ 판사(○○기, 2009. 1.경)

- 판결등록 지연(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선고에 기인한 경우 포함) ➠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
- 판결등록 오류 ➠ 서면경고, 주의촉구(주된 조치), 또는 조치 없음
- 조서작성 오류 ➠ 구두경고 또는 조치 없음

▪ **조○○ 부장판사(○○기)** : 피고인 퇴정하에 증인신문을 한 후 피고인에게 증언요지를 고지하지 않으면서 공판조서에 그 이유를 '증언이 일관성이 없어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변호인 열람·등사) 위 증언요지 불고지 이유 부분을 '증언이 난삽하고 복잡하여 요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판조서에 수정 기재함(변호인 열람·등사) ➠ 상고심에서 공판조서 대체의 위법 여부도 판단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비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 조치하지 아니함(2011년)

▪ **김○○ 부장판사(○○기)** : 감정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조서에는 감정인이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감정한 것으로 조서를 임의로 작성 ➠ 수사기관 고발되어 기소유예, 별도의 내부 조치 없음 (2005년)

▪ **김○○ 부장판사(○○기)** : 잘못 작성된 조정조서가 양측 대리인과 피고 본인에게도 송달된 상태에서 원고대리인의 경정신청을 받고 피고대리인에게만 확인한 후 기존 조정조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송달 ➠ 불문(2001년)

▪ **정○○ 판사 (○○기)** : 검사의 증인 신청과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재판장이 불허하였음에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구형을 하지 않았음에도 구형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기회를 준 것처럼 기재 ➠ 별도의 내부 조치 없음(2008년)

▪ **이○○ 판사(○○기)** : 변론기일이 변경되었음에도 사무분담 변경 前 재판장이 기일변경명령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 재판장이 착오 입력된 사건진행 내역에 기초하여 만연히 기일진행 변론조서 작성을 지시하고 전임재판장의 도장을 날인 ➠ 구두경고(2012년)

3. 재판결과(오판) 직무감독권 행사의 영향 및 이를 고려한 검토방향

▣ 긍정적 영향

- 튀는 판결의 최소화에 기여하여 법적 안정성,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국회와 언론이 단골로 지적하는 사례의 발생을 예방
- 재판받는 당사자들이 권리관계 예측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
  ➠ 각종 거래에 있어 위험 비용의 감소 가능

● 법관에 따라 재판결과가 다를 경우의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복불복에 의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함
- '법관이 누구인지'라는 요소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현행 법령에 반하는 판결 등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판결을 최소화함

▣ 부정적 영향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사법행정권의 개입이라는 이유로 법관들에 의한 대규모 반발도 발생 가능

① 직무감독의 대상에 대한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② 직무감독 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 나아가 직무감독이 가능한 범주의 잘못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2]에 대한 제재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논란 제기 가능
③ 정당한 직무감독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왜곡·선전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 현재 일선법관들이 자신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분위기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법원에 대한 진정·청원, 국민감사청구, 인권위 등 외부기관에 대한 진정, 오판을 이유로 법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증가 가능

- 예컨대, 확립된 판례에 따른 증거능력 및 가치 판단을 잘못한 경우에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부에 보일 경우, 상당한 수의 재판에서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이 심급에 따른 사법시스템 외에서 만족을 얻거나 판사를 제재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할 것임
- 진정·청원 등의 숫자 증가와 그로 인한 사법불신 증대의 외관 형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종래 심급제에 의하여 교정되는 "잘못"들이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해 외부에 드러날 경우, 그 객관적 숫자나 내용에 따라 오히려 법원에 대한 신뢰가 훼손

2) 특히 고의나 악의,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과 같은 '내심의 의사'를 요건으로 할 경우 불분명성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음

될 우려가 있음

- 법관을 위축시켜 법관으로 하여금 소극적·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음
  ➠ 법관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판결을 하기 곤란해질 수 있음

▣ 직무감독권 행사 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할 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명백'할 뿐 아니라 '중대'한 잘못으로서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물의가 야기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절차적으로 정당·투명하게 행사

- '중대'한 잘못 ➠ 사소한 잘못까지 개별적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가 될 것임
- '물의야기' 발생 ➠ 내부적으로 인지하는 모든 잘못마다 문제삼는 것은 부정적 영향 발생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사후적·개별적' 검토 ➠ 사전적·포괄적 검토는 그 자체로 법관들의 강한 불만 제기 가능
-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중대·명백한 잘못' 여부의 판정 자체가 주관적·자의적이라는 시비 발생 시 '부정적 영향'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됨

4. 직무감독권 행사 방안

1) 개요

절차적 정당화 방안 마련		실질적 정당화의 기초 마련		
"위원회 등의 심리"를 통한 절차적 정당화 방안 모색	+	추상적 사례 수집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발주 등)	→	구체적 사안에 관한 사례 수집·검토 (국내외 사례 수집)

2) '중대·명백한 잘못'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마련

▣ [판단 주체] 외부인사 vs. 내부인사 vs. 기타

● 판단주체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정당성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외부인사에 의한 판단의 경우] ➠ 외적 객관성 확보 가능

- 법원 내부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닌 외부의 객관적 시선에 의한 판단임을 보여줄 수 있음
- 다만, 그 판단결과로 영향을 받을 법관들로서는, 외부인사가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판단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음
  - 특히 재판상 판단에 관한 직무감독에 대하여 가장 불만을 제기할 사람은 **내부의 법관**이라는 점에서 외부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음

[내부인사에 의한 판단의 경우] ➠ 내적 가치 반영 가능

-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가 정확히 반영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내부인사는 사법행정권자의 영향을 받아 판단하는 것으로 바라볼 여지도 있음
- 또한 '중대·명백'한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장단점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와 내부인사'가 모두 포함된 **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법원 외부에 객관성을 보이려는 경우 vs. 법원 내부에 설득력을 높이려는 경우)에 따라 결정할 필요는 있음
- 한편, '중대·명백'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는 데다가, 특히 **법관들은 '판단'을 업으로 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법관들 '스스로' 판단한 것을 더 우선시할 수 있음 ➠ 각 법원의 '판사회의'를 통한 판단도 차선적으로 검토 필요

● 한편, 모든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판단받는 것으로 족함 ➠ 이미 판단받은 바 있는 동일한 유형으로서 법원 내·외에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사안까지 위원회 등에 회부할 필요 없음

● 한편, 다른 목적의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심의 권한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위원회 ①] 별도의 위원회 설치 여부 ➠ 부정적임

-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재판결과'에 대한 심사를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외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그 자체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특히 신규 위원회의 경우 그 구성위원들이 관련된 개개의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위원회 소집하여 '개입'하기를 원할 것임 ➠ 법원 감사위원회의 경우 매 사안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가급적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원회 ②] 기존 위원회의 활용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가능성

- 통일적 판단을 위해서는 대법원(또는 법원행정처)의 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함
-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이미 설치된 위원회 중 이러한 성격에 정확히 맞는 위원회는 없음

[2014 사법연감]

▪ 대법원 위원회

1. 법관징계위원회, 2. 판례심사위원회, 3.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 4.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5. 법관인사위원회, 6. 양형위원회, 7. 사법참여기획단, 8.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9. 국민사법참여위원회, 10.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1. 법원 감사위원회)

▪ 법원행정처 위원회

1. 고등・보통징계위원회, 2. 소청심사위원회, 3. 법원행정처 공적심사위원회, 4. 중앙・보통고충심사위원회, 5. 제안심사위원회, 6.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 7. 대법원 예산집행심의회, 8. 법원청사건축위원회, 9.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10.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11.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 12.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13.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 14.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15. 청원경찰징계위원회, 16.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17. 보통승진심사위원회, 18. 대법원청사관리위원회, 19.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 20.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21. 해외연수선발위원회, 22. 성희롱심의위원회, 23. 코트넷운영위원회, 24. 국선변호위원회, 25. 국제규범연구위원회, 26. 근무성적평정위원회, 27. 성과급심사위원회, 28. 홈페이지평가위원회, 29. 홈페이지관리위원회, 30.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 31.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33.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34. 회생・파산위원회, 35.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36.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법원 감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함

-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의 감사활동' 자체가 심의대상이므로 법관의 행위의 당부를 평가하는 위원회로는 부적절함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적용이나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심의가 가능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권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6.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도 **법관윤리강령상의 의무**임

법관윤리강령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②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 과거 '재판사항'으로 여겨지던 '법정 언행'에 대하여 직무감독권을 행사하기 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전례도 있음

▣ [심사방법]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중 가능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가능

- 참고로,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각종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제10조 (사실확인 조사)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출장, 관계인 접촉,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필요 시 관련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

● 또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내에 '안건의 사전 검토'나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음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10조의2(분과위원회)
>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1. 위원회 위원
> 2.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어, 필요 시마다 위원들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론]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거치는 방안

● 각급 법원장이 회부한 사항은 판사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음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조(직능)
> 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2.16, 2009.9.28>
> 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 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 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 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 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 7.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 언론을 통한 물의야기 등 특정 사례 발생 시, 특정 법관에 대한 '개별적' 조치가 아닌 '**향후 발생의 예방**'을 의도하는 경우, 이용 고려 가능
- '직무감독권 행사'의 다양한 태양 중 하나로서 판사회의에 회부하여 '중대·명백한 잘못' 여부를 논의하게 함 ➠ 논의 자체만으로도 개별 판사뿐 아니라 판사회의 구성원 전체에 적절한 재판관 행사에 관한 'Signal'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내부 구성원들만에 의한 논의라는 점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발생 가능한 점, 사안에 따라 회부 자체만으로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점 등은 고려하여야 함

3) 실질적 정당화의 기초 마련

▣ 위원회 또는 회의 등에의 회부 前 사전 자료 수집·검토 필요

- '명백'한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함 ➠ '중대성'까지 부가하여 검토할 경우 더욱 명백함
-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중대·명백'의 판단이 불분명할 수 있음 ➠ 불분명한 사안을 위원회 등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음
  - 특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의 사안 회부는 '대법원장님'의 권한인 점 고려 필요
- 따라서 회부 前 사전적인 준비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추상적인 사례 수집·검토 (사전적 준비)

● 사법정책연구원에 연구 발주

- '사법행정권의 행사의 한계 - 재판권과 관련하여'라는 주제 등으로 연구 발주
- 주제 자체에서는 법관의 반발이 없도록 '한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직무상 감독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다양한 각도의 검토도 포함하도록 함
- 더불어 연구자료 발간을 통해 '논의의 발단'을 마련하고 은연 중에 법관들에게 관련된 'Signal'을 줄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판례위반"을 명백한 잘못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 필요

▪ 판례의 의미와 효력의 검토 필요
- 판례의 구속력 존부 및 그 범위
- 대륙법계와 보통법계의 비교
- 대법원 판례와 그 밖의 심급의 판례의 이동(異同) 등

▪ 판례 위반의 원인이 판례 부지인지, 기존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결과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검토 필요
- 하급심에서 판례 부지 또는 적용 실수로 인한 판례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도 고려 필요

● 해외 사법선진국 사례의 수시 수집 및 게시

- 수시로 외국 사례를 수집
- 해외의 다른 유형의 징계 사례와 더불어 재판사항에 관한 징계사실을 포함하여 '윤리자료'에 게시 ➠ 자연스럽게 재판사항도 징계가 될 수 있음을 알림

▣ 구체적 사안에 관한 사례 수집 · 검토 (사안별 처리)

● 언론 등을 통해 물의가 야기된 경우, 관련 국내외 사례의 수집

- 위원회 회부 전 국내의 과거 전례와 외국의 사례들을 수집하는 등 사전적으로 충실한 검토 선행 필요
- 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재판연구관실 등 내부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필요